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시행령 포함)

문 38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·조정한다.
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는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에 대한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
-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문 39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관리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소관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차관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된다.
- ④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문 40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A시에 발생한 ㉠ 대규모재난의 대응·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甲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었다.

- ①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·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A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甲이 인정하는 재난은 ㉠에 해당한다.
- ② ㉠이 대한민국 영역에서 외국인의 생명·신체에 피해를 주는 재난인 경우에는 甲은 외교부장관이 된다.
- ③ 甲의 요청에 의해 파견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은 대규모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.
- ④ 甲은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 및 A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.

문 41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신고 및 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재난의 발생을 발견하였음에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② 재난 신고를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즉시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시·도지사는 보고받은 재난상황이 2개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쳐 발생한 재난인 경우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문 42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또는 격리를 위한 시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·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해당한다.
-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현장에서 긴급통신수단이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 유형별로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정·운용하여야 하는 국가재난관리기준에는 재난 분야 용어정의 및 표준체계 정립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④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참여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문 45. 다음 사례에서 ㉠ ~ ㉣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위반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X광역시의 시장은 X광역시 Y동의 화재로 인하여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극심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,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하였다.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위 화재로 인해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안전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판단하에 ㉠ 중앙안전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재난사태를 선포한 후 지체 없이 중앙 안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.

한편, 위의 화재가 발생하자 X광역시 긴급구조통제단이 설치되었고,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㉡ X광역시 소방본부장 甲은 즉시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긴급수송 및 구호품의 확보의 응급조치를 하였다. 그리고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기 위하여 ㉢ 甲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제한 대상 구간 및 기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도록 요청하였다.

이후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㉣ 甲은 신속기동요원, 자원지원요원, 통신지휘요원, 안전담당요원, 경찰관서에서 파견된 연락관,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 센터에서 파견된 연락관으로 구성된 권역현장지휘대를 구축하였다.

① ㉠, ㉡

② ㉡, ㉢

③ ㉡, ㉣

④ ㉢, ㉣

문 46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위기경보의 발령 및 재난 예보·경보체계 구축·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자연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-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할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나, 해제하는 경우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,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,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·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문 47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기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·운영하게 하려는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나, 긴급한 경우에는 말로 요청한 후 사후에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.
- ② 재난상황이 끝난 후 실시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는 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·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, 시·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행정기관·공공기관·공공단체(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)의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긴급구조교육을,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정기긴급구조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④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의 결과가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문 48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의 현장지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시·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에 관하여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.
- ②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·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.
- ③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 통제단장이 한다.
- ④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자가 현장지휘소에 파견해야 하는 연락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 관련 업무 실무책임자로 한다.

문 49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응 및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피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데, 이때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단장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한다.
- ②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의 장에게 필요한 응원(應援)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응원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응원을 요청한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지휘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하여야 한다.
- ④ 재난의 응급대책·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·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.

문 50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문화 진흥에 대한 설명이다. (가) ~ (라)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?

-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(가)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.
- (나)은/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를 개발·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- (다)은/는 재난을 예방하고,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현장을 제정·고시하여야 한다.
-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(라)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	<u>(가)</u>	<u>(나)</u>	<u>(다)</u>	<u>(라)</u>
①	4월 16일	행정안전부장관	국무총리	1천명
②	5월 25일	국무총리	국무총리	1만명
③	4월 16일	국무총리	국무총리	1만명
④	5월 25일	행정안전부장관	행정안전부장관	1천명